

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8. 20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8. 20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99. 8. 26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)

가. 제안이유

○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된 공수의 업무구역 안 순찰 횟수와 부천시공수의조례 제7조의 출장 횟수가 상이하여 부천시공수의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공수의가 업무 구역을 월 10회 이상 순회 출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월 2회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공수의 출장 횟수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	○ 상위법에 맞추고 또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입니다.
○ 현재 부천시 공수의는 몇 명입니까?	○ 없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196호
의결년월일	99. 8. 27 (제72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8. 20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된 공수의 업무구역 안 순찰횟수와 부천시공수의조례 제7조의 공수의 출장횟수가 상이하여 부천시공수의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공수의가 업무구역을 월 10회 이상 순회 출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월 2회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(안 제17조)

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7조제1항 중 “월 10회 이상”을 “월 2회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) ①공수원은 월 10회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	제7조(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) ①공수원은 월 2회 이상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.